



대통령령 제20761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8. 4. 3

### 1. 개정이유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특별대책지역에서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시간과 폐수발생량에 따라 예비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별대책지역의 수질관리에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3호 중 “제8항제2호”를 “제7항제2호”로 한다.

별표 6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1일 24시간 연속하여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 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배출 폐수의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령 제284호

##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08. 4. 7

### 1. 개정이유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수법」(법률 제7569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하수오염유발



시설의 범위에 석유판매업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를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오염방지 조치명령완료통보 기한의 연장(안 제3조)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제출하는 조치명령완료통보서의 제출 기한을 종전의 7일에서 15일로 연장함.

###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4조 및 별표 2)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석유판매업 시설을 제외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변경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여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석유판매업 시설을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다. 정기 수질검사 제외대상(안 제10조)

생활용수·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의 경우에는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환경부령 제285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 4. 17

## 1. 개정이유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검사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 연장(안 제85조, 제106조제2항 및 제3항)

(1)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이 짧아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선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환경법규

- (2)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개선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개선결과의 보고자를 종전의 자동차 소유자에서 확인검사대행자로 변경함.
- (3) 개선명령을 받은 운행차 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준수사항(안 제104조의2, 별표 30의2 신설)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자에게 정밀검사 업무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자동차를 정비하도록 함.
- (3)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시명 구 분		미국 수자원 전시회 (WEFTEC)
개최기간	2008. 10. 19 ~ 10. 22	
장소	미국 시카고 McCormick Place	
개최규모	1,017업체 참가 / 268,405sq.f	
전시품목	수질환경관련기기 및 제품	
관람예상인원	전문 바이어 20,000여명	
과년도 전시현황	1,017업체 / 19,929명 전문바이어 참관	
한국관 참가규모	10업체(90m <sup>2</sup> )	
행사주관	환경보전협회	
참가업체 지원사항	중기청 국고 보조(임차료, 설치비, 홍보물 등 일부보조)	
주요활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전협회 한국관 설치운영</li> <li>- 우리나라 우수 중소업체 환경설비·기술·제품 홍보 및 바이어상담</li> <li>- 양국간의 환경산업의 기술교류 확대 및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환경기술 세미나 발표</li> </ul>	

\*참가문의 : 환경보전협회 기획사업부 (☎02-2249-5265 교환 613, 617, 633)